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 시 장기복무 장교에 포함〉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66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3
IV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3.
3. 회부연월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음.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들도 군사 교육 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됨에도 장기복무를 위해서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기회손실이 커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타 육·해·공 사관학교와 비교할 때 불공정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강군 육성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직업군인을 목적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을 단기복무장교로 규정하는 것은 국고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제4호)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첩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도록 하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생략)	제6조(복무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 -----.
1. <u>사관학교</u> 를 졸업한 사람	1. <u>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첩단과학기술사관학교</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 -----.
1. <u>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u>	<삭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 7. (생략)

② ~ ⑥ (생략)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복무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병역법」 -----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복무의 구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생 략)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를 졸업한 사람

2. ~ 4. (생 략)

④ ~ ⑧ (생 략)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
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
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
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
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
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
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
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
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
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병역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
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
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
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u>축할 수 있다.</u> 5. ~ 7. (생략) ② ~ ⑥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과 시행 예정법(법률 제20018호)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은 임관 시부터 장기복무장교(의무복무 10년)로 분류됨. 반면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은 단기복무장교(의무복무 6년)로 임관한 뒤,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통해 선발되어야 함¹⁾.

상기 생도들 역시 재학 중 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함에도,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은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장교로 분류되고,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은 그렇지 못함.

이러한 복무제도 이원화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을 목적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1)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제공하면서도 단기복무장교로 규정하는 것은 국고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단기복무(6년 의무복무)가 아닌 장기복무(10년 의무복무)로 분류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직업으로써 더욱 오랜 기간 군에 복무토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장기복무가 보장되면 초급간부들의 복무의욕이 높아지고,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여 전력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둘째, 국고로 교육받은 생도들이 장기간 복무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특히 국방 R&D나 간호 병과처럼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서는 10년 이상의 복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①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로 전환이 된다면 다른 획득경로로 임관한 장교(학군장교, 학사장교 등)의 장기복무 선발 소요가 감소하여 지원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최근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의 지원을 감소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육군3사관학교 장기복무 전환시 출신별 장기복무 선발 예상 경쟁비]

구 분	총 소요	임관 2년차 선발공석	획득경로별 선발인원 및 경쟁비							
			3 사		학 군		학 사		기 타 ²⁾	
			선발	경쟁비	선발	경쟁비	선발	경쟁비	선발	경쟁비
'23년 선발결과	764	611	166	2.5:1	327	3.5:1	57	5.1:1	61	1.8:1
육군3사관학교 장기 전환시	304	243	460	1:1	179	6.4:1	31	9.4:1	33	3.3:1

[최근 5년간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 지원율]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학군 지원율	3.0:1	2.7:1	2.5:1	2.3:1	1.6:1
학사 지원율	2.8:1	2.4:1	2.6:1	2.4:1	2.1:1

자료: 국방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육군은 現 인력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로 인하여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의 일률적인 장기복무 전환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미래 병력구조(소수획득-장기활용) 재설계 전까지는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제도(30%) 도입 등 현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② 국군간호사관생도의 의무복무 후 전역율은 최근 5년 기준 58.1%에 달하며, 장기복무 지원율은 6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장기복무가 의무화될 경우 지원을 변화와 군 간호 인력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기타 획득경로로는 간부사관, 군종·법무 등 전문사관이 있음

[국군간호사관생도 의무복무 후 전역률]

구분		입관인원	전역 인원	전역률
육군	2013년 입관	56	30	53.6%
	2014년 입관	67	43	64.2%
	2015년 입관	70	40	57.1%
	2016년 입관	75	43	57.3%
	2017년 입관	72	38	52.8%
해군	2013년 입관	3	2	66.7%
	2014년 입관	3	2	66.7%
	2015년 입관	3	2	66.7%
	2016년 입관	3	3	100.0%
	2017년 입관	3	0	0.0%
공군	2013년 입관	3	3	100.0%
	2014년 입관	3	3	100.0%
	2015년 입관	3	2	66.7%
	2016년 입관	3	2	66.7%
	2017년 입관	3	2	66.7%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자 장기복무 지원율 및 선발률]

	입관 대비 지원율	지원 대비 선발률
육군	68.8%	62.8%
해군	93.3%	46.7%
공군	20.0%	60.0%

* 자료: 국방부

* 간호사관학교 출신, 5개년 평균 선발률로 산출

- ③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예정 가능성이 있는 과학고 학생(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의무복무 기간의 축소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이는 장기복무 의무화가 지원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³⁾.

□ 국방부는 ①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시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군·학사 장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므로, 부칙에 적용 시기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②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시키는 개정안은 대위급 숙련 인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위관급 위주로 편제된 간호병과 특성상 영관급 활용이 제한되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③ 유사 제도인 과학기술전문사관예 장기복무 지원자가 없는 점⁴⁾을 고려하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 증가로 개정안이 오히려 우수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6년 개교 이후 일정기간 운영 후 전원 장기복무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3)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865호)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조

4) 2017년 제도 창설 이래 장기복무 지원자는 0명임